

2018. 3

www.nts.go.kr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Contents

- 01 납세자권리헌장
- 02 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 03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 04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 05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 06 사업자등록 안내
- 07 홈택스 이용 방법
- 08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 방법
- 09 부가가치세 안내
- 10 종합소득세 안내
- 1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 12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 13 불복청구 절차
- 14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 15 그 밖에 사업자가 알아 둘 사항



납세자와의 소통 제도 안내

세금고민, 소통하니 풀렸어요

세금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세금교실,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세금불편 해소를 지원하고
-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지원 제도

세금 불편 해소 지원



세금교실

세금교육을 원하는 납세자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세금교실 운영



방문상담

영세납세자,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찾아가 세무지원 제공



관리자 상담

세무서의 관리자와 상담할 수 있는 홈택스의 관리자방문상담예약제도 운영

납세자 의견 청취



간담회

일반 시민, 영세사업자, 사업자단체, 언론계, 학계 등의 의견을 세정에 반영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하시거나 국번없이 **1215** (→ ③번)으로 전화하여 소통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도 → 방문상담 예약 → 관리자방문상담예약 선택

알아두면 쓸모있는 유익한 세금정보

부 가 가 치 세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 신고대상	확정 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제2기 7.1.~12.31.	1.1.~6.30.까지 사업실적 7.1.~12.31.까지 사업실적	7.1.~7.25.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일반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조기 회금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기 예정신고 (1.1.~3.31. 실적)	4.1.~4.25.
		제2기 예정신고 (7.1.~9.30. 실적)	10.1.~10.25.
간이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금대가 (납부세액)가 적진 과세기간의 공금대(개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 (1.1.~6.30. 실적)	7.1.~7.25.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소득(급여, 사업 등을 지급할 때에 사업자가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및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4 대 보 험 안 내

- 4대 사회보험의 신고는 사업장에 가까운 기관들 중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인터넷 (www.4insure.or.kr)으로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해결됩니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신제보험
적용사업장	근로자 1명 이상 고용사업장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신제보험
부과소득 상한선	449원 (동급임금)	7,810만원 (동급임금)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보험료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사업주가 전액부담	사업주가 전액부담
담당기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상담전화	국민연금이 1355	1577-1000	국민연금이 1350	1988-0075

세금불편, **365**통하고 지원받고 쉬운 세무 편리한 납세

365통 서비스란? 세금불편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도와드리는 국세청의 세무지원 서비스



권리보호요청제도



납세불편, 말씀만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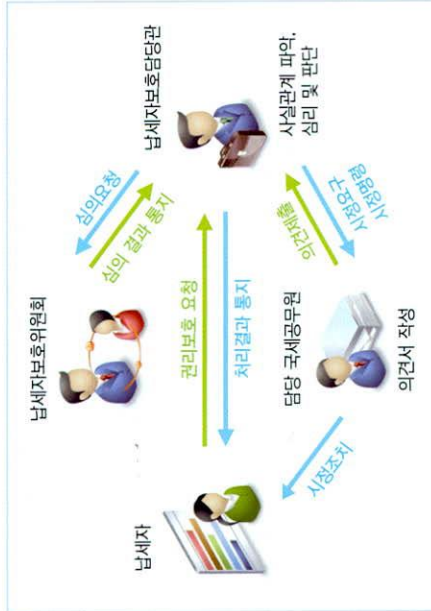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예상) 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세무조사

세법 등에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조사기간을 임의 연장하는 행위, 중복조사, 등

일반 국세행정

압류해제 등을 지연하거나, 금품·향응 또는 업무와 무관한 편의 요구 등



권리보호요청, 이렇게 하세요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번없이 **1212** (→③번)으로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납세자 보호민원 ➡ 권리보호요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복잡한 세무, 전문가가 풀어드립니다

세법을 알지 못하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과세자료 해명 등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전반에 대한 무료 세무자문

창업자 멘토링

(예비)창업자에게 창업한 다음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

폐업자 멘토링

폐업한 사업자에게 폐업한 다음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

찾아가는 서비스

장애편인 등 납세자의 상담수요가 밀집한 곳에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홈택스 누리집의 「영세납세자 도움방」에서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납세자 보호민원 ➡ 권리보호요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12** (③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은 납세자 권익보호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세무전문가(세무사·공인회계사)와 국세청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중소벤처기업부 협업행정



-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폐업 후 재기**를 지원합니다.
- 취업의사**를 가진 폐업자들에게 국세청 영세납세지원단의 폐업자멘토링과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ope.biz.or.kr)에서 희망리턴 패키지과 폐업자멘토링을 통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 1588-5302)

- 재취업의사**를 가진 분의 경우에는 국세청 영세납세지원단 폐업자멘토링과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패키지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 * 폐업자멘토링만 신청하려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나 홈택스(www.hometax.go.kr) → 영세납세자도움방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영세납세지원단 폐업자멘토링

Q 폐업자멘토링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세무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국세청 영세납세지원단** 세무도우미가 일대일로 폐업한 영세납세자를 도와드리는 무료 **세무자문서비스**입니다.

Q 폐업자멘토링 서비스 대상은 누구인가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폐업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해당법인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 폐업자멘토링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폐업일 이후부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최장 1년 5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폐업 이후 신고해야 할 세금 신고 상담
- ▶ 체납세액 등에 대한 징수유예제도 안내
- ▶ 과세자료 해명요령, 권리구제 방법 등